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2021. 12.



이 성 순 의원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제안자: 이성순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1월 12일 개정되고,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규정 사항에 부합하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복무선서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에서 제7조까지는 책임완수, 비밀엄수, 근무 기강 확립, 친절·공정,
복장 등에 관한 사항을
-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당직, 겸임근무, 파견근무, 면직된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는 연가계획 및 허가,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및 특별 휴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끝으로, 안 제15조에서 제17조까지는 국외여행, 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사항과
함께 시행규칙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2021년 11월 25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달서 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이성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00821217
----------	----------

발의일자: 2021. 11. 25.

발의자: 이성순, 김화덕, 김태형, 배지훈,
박정환, 이신자, 김귀화, 조복희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안 제1조)
- 나. 복무선서(안 제2조)
- 다. 책임완수, 비밀엄수, 근무기강 확립, 친절·공정, 복장 등(안 제3조 ~ 제7조)
- 라. 당직, 겸임근무, 파견근무, 면직된 공무원의 근무(안 제8조 ~ 제11조)
- 마. 연가계획 및 허가,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특별휴가(안 제12 ~ 제14조)
- 자. 국외여행, 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시행규칙(안 제15조 ~ 제17조)

3. 참고사항

- 가. 제정조례안 : 붙임
- 나. 관계법령 : 붙임
 - 1) 「지방자치법」 제103조
 - 2) 「지방공무원법」 제47조, 제59조
 - 3)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7조의 7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7조 및 제59조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7조의7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서를 할 때에는 별표 1의 선서문과 별표 2의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을 따른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근무기강 확립)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며, 별표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주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제복착용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③ 공무원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따른다.

제2장 당직 등

제8조(당직)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등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할 수 없으며,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의 복무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면직된 공무원의 근무) 의장은 사무 인계 또는 남은 업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면직된 공무원을 15일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휴가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과 부모의 참여가 필요한 자녀의 학교 행사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3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법 제27조제2항제2호 · 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의 연가가산은 별표 4와 같다.

제14조(특별휴가) ① 의장은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장기재직휴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1.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20일 이내
2.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20일 이내(단, 제1호의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40일 이내)
3.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0일 이내(단, 제1호 및 제2호의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50일 이내)

④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은 군 입영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의장은 주요 시책, 현안사업 등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목표를 달성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포상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6조(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의장은 공무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
2. 근무시간의 조정
3. 시간외근무 명령의 제한
4.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선 서 문 (제2조제2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염숙히 선서합니다.

[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 (제2조제2항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용장을 수여받을 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용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따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의회사무국장이 담당한다.

[별표 3]**공직자 행동 규범** (제5조 관련)

대민 관계	대내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 항상 웃으며, 차별 없이 대한다. ◦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 ◦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 민원은 신속, 공정하게 경제부담이 없도록 처리한다. ◦ 주민의 존경과 신뢰받도록 개선한다. ◦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을 엄수한다. ◦ 어려운 동료를 돋는다. ◦ 근검 절약한다. ◦ 남에게 겸손한다. ◦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한다. ◦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 ◦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별표 4]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제13조 관련)

1. 공무원 이외 다른 경력 인정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어 초임호봉획정 또는 호봉재획정 받은 사람

2. 공무원 이외 다른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가.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 안함

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음

[별표 5]

경조사 휴가일수표 (제14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10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 고 : 1.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2.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한다.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47조(복무 선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재직기간	연가 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2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14
3년 이상 4년 미만	15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